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(안)

검토보고

운영위원회(구의회사무국)

| | |
|------|---|
| 의안번호 | 제70호 |
| 제출자 | 임태근 의원 외 6명 |
| 의안명 |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(안) |
| 검토 | 전문위원 유천곤 |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, 성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규칙안의 제정목적 (안 제1조)
-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~제8조)
- 조기퇴직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~제15조)
-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~제22조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1)」
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)」

- 제13조(시행규칙)** 근속연수의 계산,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,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, 그 지급절차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(교육규칙 또는 의회규칙을 포함한다)으로 정한다
- 17조의3(자진퇴직수당)** ①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당(이하 “자진 퇴직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(비서관·비서를 제외한다)은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편성

다. 입법예고 : 2022. 11. 10. ~ 2022. 11. 15.

4. 검토의견

- 본 규칙(안)은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으로 구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, 성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 퇴직 수당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과,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.
- 검토 결과, ‘성북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’을 적용받던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해 성북구의회로 분리하여 적용받도록 본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.

⑦ 근속연수의 계산,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, 그 지급절차,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(교육규칙 및 의회규칙을 포함한다)으로 정한다.